

[한국여성학회 2012년 1차 학술포럼]

'Others' Encounter 'Others': Feminist Practice on Multiculturalism

‘타자들’ 간의 새로운 만남을 상상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실천

2012년 5월 11일 (금)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주최: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주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Program

1:00 - 1:30 등록 및 개회

- ▶ **개회사** 정진성(한국여성학회장)
- ▶ **축사**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1:30 - 3:30 1부 학술발표

- ▶ **사회**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1.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과 용어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이민경(대구대 교육학과 교수)
- 2. “아시아 여성이주 돌아보기: ‘불법’체류와 연예(성)노동, 국적취득의 문제”
김민정(강원대 인류학과 교수)
- 3. “‘한국식’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시민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이주여성인권포럼 사무국장)

3:30 - 3:45 휴식

3:45 - 5:30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

- ▶ **사회**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1. **대안적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의 가능성**
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 **현장 주체들의 실천과 연대**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아이다마켓시스터푸드 대표)
- 3. **이론, 실천과 정책의 연결 지점**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4. **결혼이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두년(중원대 법학과 교수)
- 5. **입법적 조치와 정책 제언**
김춘진(국회의원)

목 차

1부 학술발표

1.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과 용어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이민경(대구대 교육학과 교수) 3
2. “아시아 여성이주 돌아보기: ‘불법’체류와 연예(성)노동, 국적취득의 문제”
김민정(강원대 인류학과 교수) 21
3. “‘한국식’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시민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이주여성인권포럼 사무국장) 43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

1. 대안적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의 가능성
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73
2. 현장 주체들의 실천과 연대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아이다마켓시스템푸드 대표) 75
3. 이론, 실천과 정책의 연결 지점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77
4. 결혼이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두년(중원대 법학과 교수) 79
5. 입법적 조치와 정책 제언
김춘진(국회의원) 81

제 1 부 학 술 발 표

다문화 담론과 용어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정책담론과 용어를 중심으로

이민경(대구대학교 교육학과)

I. 문제제기

2000년 이후 한국사회로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구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폭발적인 다문화담론을 생산해 왔고 정책적, 대중적 담론의 핵심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실행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김희정, 2007; 김현미, 2009; 김혜순, 2008; 2010)이 존재하지만 국가주도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¹⁾ 이른바 ‘다문화 정책’²⁾이라고 불리는 여러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차원의 다문화 담론이 형성, 전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다문화 지원 사업’이나 관련연구 활동도 가파르게 증가, 확산되어 왔다(김혜순, 2008; 2010; 이민경, 2010a; 2010b). 물론 어느 사회 혹은 어떤 정책을 막론하고, 정책적 의제의 설정과 담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적 주체들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관련 연구, 현장 활동을 통하여 각각 다른 다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해 왔으며, 이렇게 생산된 다문화 담론

- 1)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같은 이름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담론의 주체에 따라 내용과 실천적 지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어떤 인식과 관점에 기반하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은 많지 않다. 김희정(2007)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관주도 다문화주의(state-sponsored multi-culturalism)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주도 다문화정책은 정책입안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정책 아젠다를 시민사회와의 협의구조 속에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채택한 것이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을 관주도 다문화주의로만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김혜순, 2007).
- 2)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도 논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실제로는 ‘동화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이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아니며(김현미, 2009), 실제로 정책언어에서 다문화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명명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김혜순, 2010). 이처럼, 다문화정책이란 용어에 대한 논쟁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가 매우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은 정부부처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김혜순, 2008; 2010; 이민경, 2010a; 2010b).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지배적인 사회주체들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협상해온 사회학적 현상”(김혜순, 2008)으로 정의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 이에 따른 현장의 실천은 연구와 언론 그리고 학술 담론으로 재현되고 다시 정책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이처럼,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다문화 정책 담론은 정책적 이해와 논리에 의해 채택되고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면서 형성,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Foucault(1971)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나 담론³⁾은 일정한 과정에 따라 통제되고 조직되며 재분배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특정한 담론이 ‘배제되는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한 사회의 특정한 담론은 선별과, 통제, 배제의 과정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행해진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과 관련 언어 현상에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주요 사회 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담론의 영향력은 현실적인 권력의 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 사회에서 특정한 담론의 형성과 용어의 통용은 지칭 대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범주와 이미지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구별짓기’(Bourdieu, 1979)를 통해 서열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무의식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위계적, 서열적 질서가 매우 강한 한국사회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이민경 2010b). 소위 말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문화적 소수자,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만을 수식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들을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언어기제로 작동되면서 동시에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담론과 관련 용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 담론과 용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배적 사회주체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다문화 정책담론과 용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여기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찰 혹은 성찰한다는 것은 여성 이

3) 여기에서 담론이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를 의미한다(Foucault, 1971). 다시 말하면 ‘-라고 말해진다’라는 층위에 존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주문제만을 다루거나 여성의 관점과 입장을 에서 바라본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 보편적 권리/개별적 인정, 주체/타자, 포섭/배제, 공적/사적 분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관점으로 고찰한다는 의미이다.

정책 담론분석이란 정책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프레임을 분석하여 어떤 신념이나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Foucault, 1971).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과 용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적 언어들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 낯선 시선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이주 여성의 문제를 넘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이슈를 새롭게 바라보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다문화 정책 담론·용어의 개념과 분석범주

Foucault(1971)식으로 표현하면 국가의 정책적 담론은 권력을 획득한 언어이다. 따라서 정책적 담론과 용어 사용은 막강한 현실적, 잠재적 권력을 갖는다. 이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어떤 명시적 혹은 암묵적 아젠다에 의해 기획, 실행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이러한 권력의 배치와 경계를 읽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한편, 한 사회에서의 특정한 용어의 통용은 지칭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구별짓기’를 통해 서열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무의식적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아동’라는 용어가 한국사회 맥락에서는 이들을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언어기제로 작동되기도 하는 현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총체적인 이주관련 정책을 통칭하는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 역시 연구자, 현장, 정책 입안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함의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란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 정의는 한국사회 맥락에서는 논쟁적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은 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치적 비전을 표방하고 문화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적 입장이자 정부정책의 기조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논자들의 지적이다(오경석 외, 2007; 김혜순, 2007; 김현미, 2009).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으로 분류되어 공표된 정책도 없고, 다문화주의를

정책의 기조로 삼는다고 천명한 공식 정부문건도 언급 또는 인용된 적 없으며,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가 국가정책의 목표인가에 대한 합의나 공론화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김혜순, 2010). 실제로 법무부는 이주관련 정책을 외국인 정책 혹은 사회통합정책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칭하는 대상과 명명에서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특수한 정책환경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책 목표와 전제, 내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소통의 언어로서뿐만 아니라 학술적, 정책적 담론에서도 현실적인 지배력을 갖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해 이주관련 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정책’이란 개념은 다문화주의를 기조로 삼는 특정한 지향을 지닌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 용어라는 의미에서 한국사회 관련정책이 다문화주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라는 비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오경석 외, 2007; 김혜순, 2008; 김현미, 2009, 이태주 외, 2008).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대상별, 영역별, 제도적, 실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탈북자를 대상별로 검토하면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과 용어를 고찰하였다. Sleeter(2008)는 정책담론을 검토할 때는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실행되고 있는 계획 및 조치, 각 개념을 지지하거나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집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사회에서 다문화담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회자되고 정책적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 정책적 지향점을 읽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관점에 기반하여 정부의 주요한 다문화관련 정책을 관련 법안, 정부 정책 보고서, 각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자료 등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개정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안들은 결혼이민자 가족, 재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각종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각 부처의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는 대부분 각 부처가 주 대상으로 하는 있는 이주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하기 전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안과 교과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와 정책 연구논문 등 간접적인 자료들도 검토하여 정책 담론이 어떻게 유통되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작동되는지는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자료와 접근방식은 서로 분리된다기 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동된다. 따라서 관련 문헌들을 구별하여 각각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교차하면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하여 정책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와 그 바탕에 내재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III.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과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1980년 이후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외국인 인구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 등 관련 이슈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은 ‘외국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소극적 대응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사회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외국인인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김혜순, 2010). 2005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관련정책이 폭발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김현미, 2009; 김혜순, 2007; 오경석, 2007; 이민경, 2008; 2010b). 그러나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명확한 정책적 비전이나 지향점이 없어 정책도 부처별로 혼선을 겪고 있다는 비판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7; 김혜순, 2008; 2010; 김이민경, 2008; 2010b).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다소 급격하다고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주자들의 일방적인 ‘한국화’를 전제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민경, 2010a).

법이나 제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인 지향과 입장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면 담론은 이를 받쳐주는 힘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형성과 전개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담론적 특성을 3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1. 이주 집단간 차별과 배제모형으로서의 다문화 담론: 가부장적 근대국민국가 프레임

정책 담론 분석에 있어 해당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 정책적 지향점을 암시한다는 Sleeter(2008)의 지적은 한국다문화 정책담론의 이면을 읽어내는 데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현실은 한국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고(김혜순, 2010; 이민경, 2010b),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 가족’으로 명명하면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핵심대상이 되어 온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가족 유지’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부장적 근대 국민국가적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주 인구통계상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15%임에도 다문화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정치·문화적 위상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주 집단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아이를 낳아 한국가족을 유지시키는 잠재적인 한국인으로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명시된 것처럼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는 진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 법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칭이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은 국제결혼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그 의미상의 훼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배제를 함의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비다문화적 정책”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이태주 외, 2008; 이민경, 2010b).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국민국가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숫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대상화되었을 뿐 사

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에서도 소외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이선옥, 2007; 김혜순, 2007; 2010; 이민경, 2010b; 2012).

한편, 가부장적 국민국가 프레임 안에서 작동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가족’은 한국다문화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지원정책의 아젠다가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가족 결합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국 이주근로자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 가족 아젠다가 전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문 인력이나 투자자에 한해서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고 있으나 단순 노동력은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살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이 없는 이들 가족을 위한 공공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인주의적 국적법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경우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생애발달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가족관계를 허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는 이주집단 간 차별과 배제 모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재구조화에 상응하는 설명의 틀로 ‘민족주의의 양극화 경향’(Sassen, 1996; Rhacel, 2009:55에서 재인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같은 동포인 조선족에게만 체류권을 부여하거나, 국민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이주정책은 그 예이다. 이론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구지역사회의 출현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정치의 재민족주의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가 오히려 후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국민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전자의 방향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국민국가의 프레임 안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위치는 매우 특수한 국면을 띠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동일 민족으로서 혈연공동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국적상으로도 법적 공동체에 속하는 권리를 지닌다. 이처럼 국적법의 관점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합법적인 구성원이다. 이 점에서 탈북자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타국적의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자 혹은 이주노동자와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갖는다. 이주 관련 담론 및 정책이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다문화’가 ‘외국인’ 관련 정책의 표제어처럼 사용되면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이주집단인 ‘북한출신 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이주민 담론과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물론 북한출신 주민들의 경우, 남북

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이주민’적 성격보다는 ‘귀순자’적 성격이 훨씬 강조되어 온 맥락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 종결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정책이 수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으며 남북한의 관계와 이주민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귀순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리고 ‘통일역량의 잣대’로 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으나 하나의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기보다는 복수의 시각이 중층적으로 병존하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관련 정책은 남한과는 다른 북한이라는 사회에서의 삶의 경험이나 문화 등에 대한 인정에 기반하거나 익숙한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꾸린다는 이주민적 경험과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사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남한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익히도록 한다는 ‘전향’과 ‘적응’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다(이민경, 이수정, 2010). 2004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들을 남한사회에 적응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민족적, 국가적 공동체이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탈북자들의 정착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전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로서 이 법이 정해놓은 교육 및 노동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각 그룹의 성인(혹은 부모)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서로 상이하게 다른 방식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는 민족주의 기조에 발맞추어 한국사회에 온전히 통합되어야 할 ‘우리 동포’로서 적극적인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 통합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민경, 이수정, 2010). 반면,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지위와 권리문제로 말미암아 보편적 아동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물론 국가마다 특수한 다문화적 환경이 존재하듯이 결혼 이주자들의 급증은 한국사회의 이주민 유입 맥락에서 특수한 지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들이 정책과 지원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민경 2010b).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과 남한과는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주’와 ‘다문

화'적 시각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다문화 비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소한 의미의 정책은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포용과 인식의 한계를 보여 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목할 것은,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의 가족유지의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는 정책안에서도 내부 차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이혼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국적심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현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능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논리에 갇혀있는 것은 비단 체류자격만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통해서만 사회권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에 따라 여성에게 기대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혜순, 2008). 이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주요한 수혜층인 결혼이주여성들조차도 가족 유지와 재생산, 후세대 아동 양육에 한정해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만 실제 능동적 삶의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 등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정, 2007).

이처럼 이주집단내 혹은 이주집단별 위계적 질서를 함의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담론은 이주자들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면서 국민으로 포섭되어야만 사회적 인정과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지향을 읽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은 국민국가와 가부장주의 배타적 영역성, 가부장적 영토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복지담론과 신자유주의 담론의 결합: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자원 사이

다양한 차원의 다문화정책 담론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상이한 패러다임 속에 모순된 방식으로 병존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담론에서부터 타자 혹은 타문화와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지구촌 공동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가치와 지향들이 하나의 정책 담론 안에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드러나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 형성 초기,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은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범주화하면서 이들을 온정주의의 시각에서 돕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온정주의적 시혜적 차원의 정책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이 '세계화의 하위회로(lower circuit)'(Sassen, 1991)를 따라 움직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신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

경에 기반한 정책담론이다. 따라서, 이 담론에서는 다문화정책은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 이주자 그룹에 대한 지원 혹은 도움주기와 동의어가 된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정책적 담론은 어떤 계층의 이주민인가라는 분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담론은 일종의 결핍모델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중심의 다문화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인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제시된 조항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담론, ‘북한이탈주민지원계획’안의 정책지원담론은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담론은 순수민족과 혈통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른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을 적극적인 국가 정책대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다문화정책 저변의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담론은 일회적인 시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하면서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민경, 2010b) 특정한 대상을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일종의 힘의 행사이고 관용 받는다는 것은 약함을 인정”(테리다, 2004)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empowerment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일련의 비판적 담론들은 우리사회 이주자들을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담론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온정주의적 접근은 이주자들을 열등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이나 역량강화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이태주 외, 2008; 이민경, 201b). 따라서 이들은 열등하거나 문제적이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중 언어도 구사할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 사유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역량강화’, ‘정체성 함양’ ‘글로벌 인재’ 등의 언어에 의해 구성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여성은 세계화시대에서 이중 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가정 자녀들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잠재적 글로벌 인재이거나 미래의 민간외교인, 북한이탈가정의 경우는 ‘통일의 역군’으로 표상화 되면서 각 부처의 정책방향이 선회를 하게 된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미래의 잠재적 글로벌 리더”(교과부, 2009)로 재정의하면서,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하는 정책의 천명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문화 정책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재위치지워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이나 고학력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이중언어

강사로 육성하려는 정책들(교과부, 2011)은 이러한 글로벌 인재담론에 기반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글로벌 인재 담론이 ‘경쟁력’, ‘국제화 시대의 인재’ 등의 언어와 결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상호인정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공평과 평등, 타자에 대한 환대, 다름과 공존 공동체적 시민마인드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문화담론과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경쟁과 생존의 논리이면서 계량화된 방식으로의 효율성/ 적자 생존/ 경쟁력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그 지향점과 배경에서 매우 구별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렇게 모순되는 가치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우리사회 새로운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약점관점과 열등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 이들의 강점을 강조하고 이를 발달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만하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 담론은 ‘사회적 비용’에서 ‘사회적 자원’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원리에 의해 ‘능력’이 있는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특화지원의 형태로 드러나면 이주자들이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이민경, 2010b). 따라서 글로벌 인적 자원 담론 역시 여전히 결혼이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대상화하는 도구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 인재라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주체들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이처럼 온정주의적이거나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보는 도구적인 ‘다문화’ 정책담론의 형성은 이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이들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김이선 외 2010; 김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사회적 비용으로 보거나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경우 모두 문제적일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사회적 표상이 자존감의 상처를 가져오고 건강한 관계형성에 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문화적, 언어적 자본이 있는 글로벌 인재중심의 경쟁력 구도로 재편될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본이 없는 이들은 박탈감이나 소외를 느끼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도구적인 담론은 다문화정책이 이주자들을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호호혜적 관점에 기반한 공존의 모색, 공동체적 성원으로서 타자의 권리보장, 간주관성에 근거한 상호 인정(문성훈, 2011)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구별짓기’ 언어 기제로서의 정책 용어

언어는 인간이 세계에 대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 틀을 구성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와 현실적 효용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신조어 등의 새로운 언어 현상은 사회적 역동성의 핵심을 이루기도 한다(김이선, 2010).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여성’ 등의 용어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다양한 이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는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믿음과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자성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다문화사회’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당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정 대상 중심’의 논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의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한국 정책 풍토에서 중요하게 작동되었을 수 있다(김이선, 2010).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특정대상’은 주로 결혼이주민들로서 이들이 형성하는 가정이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법률적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지칭하던 이름(‘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이 갖는 부정적 함의가 지적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이름붙이기(‘naming’)의 이슈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듯한 ‘다문화’ 개념의 상징성이 채택된 것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아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붙이기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의 지형에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왔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특정한 소수자 집단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특히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맥락에서 사용됨으로써, 주류의 문화도 여러 문화 중 하나이며 소수자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는 다문화 논의의 평등주의, 사회정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다문화 아동,’ ‘다문화가정’ 등은 열등하거나 불쌍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의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이름붙이기의 부정적 효과를 잘 나타낸다(김이선, 2010; 김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개념 혹은 용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현실 혹은 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개념이 일단 성립하면 그 개념은 역으로 또 다른 실재 혹은 현실

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개념과 실제사이에 성립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개념과 실재는 상호규정한다(Kaufmann, 2002). 이점에서, 모든 개념은 문화적 경험이나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다. 개념을 듣거나 말할 때 연상되는 사회적 관계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란 개념은 학업열등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표상이 일어나면, 이들은 당연히 모두 학업열등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예외적인 특별히 뛰어난 아이들로 회자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회나 학교에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 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언어에서도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로서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 여성/아동’은 공식 영역에서 사용되는 공식어이자 대중적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에 따른 특정한 집단적 이미지를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 가지는 현실적인 이미지와 의미망들을 고려할 때, 특정한 성격, 그것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을 사회일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들을 곧 다문화(사회)로 등치시키는 용어의 확산은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속에서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열린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민경 2010a; 2010b; 이민경, 이수정, 2011).⁴⁾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자들을 우리안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대신 끊임없이 대상화하면서 우리와 그들의 구별짓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용어 규정은 이들을 특정한 정체성에 가둘 위험성이 높다. 한 개인 혹은 집단적 정체성은 시기와 장소, 시간과 관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Dubar, 1991). 따라서, 이들에게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묶음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전략으로서 스스로 선택하여 부

4) 이점에서 서구사회의 정책용어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서구사회의 경우,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 범주나 국적 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이주해와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자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삼는 대신 원칙적으로 정책 대상을 열어두되,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되도록 세부요건을 만들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체류 목적과 기간, 국적 소유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들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주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대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적(descriptive)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민경, 이수정, 2011).

여하는 정체성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종의 자기권능화(self-empowermen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오히려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여 사회적, 상징적으로 주변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경, 2008; 이민경·김경근, 2009). 이 점에서 여성을 다문화가정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가두는 것은 각 여성 개인의 서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벤하이브(2008)의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공동체에 제한하지 않고, 그들이 귀속된 정체성에 마주하여 그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전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집단적 획일화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다(벤하이브, 2008).

IV. 논의 및 결론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 혹은 개념을 갖는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실재를 포착하여 의미화하겠다는 담론적 실천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이주자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과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혹은 관점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특히, 다문화담론에서 이주 당사자들의 삶의 맥락은 없어지고, 이미 전제된 가정들이 반복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 정부부처의 정책적 담론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다문화 논의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를 평등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지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대’ 대신 이들을 구별하고 자격을 묻는 폐쇄적인 정책 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대가 “나를 찾아온 타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의식과 행동”(테리다, 2004)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에 기반하여 우리의 규범과 문화를 강요하거나 이들을 끊임없이 분리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가부장적 가족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보거나,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의 틀안에서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질서 밖의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사회성원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정책들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 민족국가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면서, 이주자들을 도구적 관점에서 타자화, 대상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담론은 기존 사회질서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접근가능한 다문화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⁵⁾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이 현행의 사회적 가치와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한 관점과 이에 따른 실천으로서의 정책이라기보다,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나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유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⁶⁾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로 인한 다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반영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문화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담론의 구성과 논의에 있어 실천적 현장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부족하고, 자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주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집단적으로 획일화하여 하향식 시혜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Ireland(2004; 김현미2009에서 재인용)는 진정한 통합이란 주류사회가 이민자들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응집(congruence)과 분리(disconnection)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을 세워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한 구조적 차원과 정치 문화적 차원 혹은 보편적 권리와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자 정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인지와 관련 정책에 있어 보편적 권리 존중과 평등주의적 상호성은 그 중요한 축이다. 이 중 어느 한 축이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사적/공적, 주체/타자, 집단/개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관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주정책의 패러다임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이주자들의 보편적 권리와 인정의 문제를

-
- 5) 실질적 평등에 대한 구현이 없이 이루어지는 다원성과 다양성의 강조는 현실적 모순을 오히려 은폐시킬 가능성이 많다. 어떤 관계이든 상호간의 평등 없이는 다양성도 ‘동등하게’ 혹은 ‘실체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조화에 대한 강조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복속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불평등한 현실과 차별받는 타인에 대한 묵인과 냉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개념으로 비판이 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이민경, 2008; 2010a).
 - 6)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의 특성을 일반화하면서 명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어 왔다.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주체로 보는 이주민 운동 진영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수식어”로만 사용하는 미디어 담론에서부터 이국적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중산층의 소비지향 다문화담론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인구정책으로 이해하는 일부 공무원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들이 경합하고 있다(김혜순, 2007). 이러한 다문화정책 담론 성격 역시 다문화 교육 정책이 기반한 문화중심적이고 시혜적이며 도구적 관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며,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의 서사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다문화 정책이란 공적영역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소외를 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다를 권리를 누리면서 ‘자원화’도 가능한 사회이며 다문화정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사회적 가치와 구조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관점의 공유와 이에 따른 실천으로서의 정책이라기보다 해결해야 할 ‘특정한 대상’에 한정된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이주자들을 대상화하여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2000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담론의 확산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한국화’에 기반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우리사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자들을 분리적 시선으로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도구적 관점을 넘어 지구화 흐름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적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현실인식과 주체적 역량, 다양한 삶의 이해를 통한 정책적인 접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6-201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김이선. 2010. “토론문1.” 『다문화 관련 정책 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 김이선 · 황정미 · 인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 문화.
- 김현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혜순.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위원회 최종 보고서.

7) 이 점에서 ‘대상 중심’ 다문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중심으로 분리와 구별에 기반한 집단적 시혜차원의 정책접근을 넘어 ‘필요’에 따른 포괄적이고 열린 정책 담론을 만들어 가는 일은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 and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쪽.
- 김혜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58-79쪽.
- 데리다. 2004.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역. 서울: 동문선.
- 라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 역.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문성훈. 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 391-418쪽.
- 벤하비브. 2008.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이상훈 역. 철학과 현실사.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민경.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방향성 고찰 : 서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2호. 83-104쪽.
- 이민경 · 김정근. 2009. 「이주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2호. 107-132쪽.
- 이민경. 2010a, 「이주가정 자녀 지원정책」.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민경. 2010b.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담론분석: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계획(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7권 2호. 155-176쪽.
- 이민경. 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 · 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37쪽.
- 이태주 · 이민경 · 백혜정 · 문경희. 2008.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 청소년 종합 지원정책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Minuit.
- Dubar, C. 1991. *La Socialisation, construction des identités sociales et professionnelles*. Paris: Armand Colin éditeur.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 Kaufmann, J. C. 2004. *L'Invention de soi, Une théorie de l'identité*. Paris: Armand Colin.
- Mucchielli, A. 1986. *L'identité*. Paris: PUF.
- Nicoll, K. 2009, *Flexibility and Lifelong Learning: Policy, discourse, politics*, New

York: Routledge.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Sassen, S. 1996. *Losing control? Sovereignt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leeter C. 2008.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2008 KSCS KSSEE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School Curriculum 37-51. 25th April.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아시아 여성이주 돌아보기: ‘불법’체류와 연예(성)노동, 국적취득의 문제

김민정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1. 문제제기

오늘날 아시아 이주에서 여성의 비중은 높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이주패턴을 보인다. 국제이주가 여성에게, 세계경제체계 내에서 전개되는 또 다른 방식의 차별과 희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통제력을 확보하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연구관심이 요청된다. 이주에서 젠더 문제는 인종과 민족 개념, 시민권과 문화적 시민권, 성별 분업, 계급성, 정치, 지역외교 등의 이슈가 맞물린 사회변화 속에서 이주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애를 기획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한국내의 필리핀 이주여성 사례를 통해 아시아 여성이주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인구는 늘기 시작했고 2007년 들어 외국인 주민 백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새로운 사회성원의 대다수는 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자들(84%)이며, 여성의 비중도 높은 편(44%)이다(외무부, 2010). 이주의 유형과 성격은 성별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출신국과 방문국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이주관련 법규 및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다. 필리핀은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대표적인 아시아 여성이주 사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내의 필리핀 여성이주 사례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서구와의 비교 맥락 속에서 한국의 여성이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2010년 한국의 출입국관련 통계수치에서 주목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외무부, 2010).¹⁾ ① 2000년대 중반이후 단기체류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

1) 아래에 언급되는 비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B2(관광통과):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는 자/ C2(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검수 운송 요령습득, 기타 유사목적 체류자/ C3(단기종합):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연수, 강습, 종교의식, 학술자료수집, 기타 유사목적 체류자로 재영리 목적자는 제외/ D2(유학):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교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자/ E6(예술홍행): 수입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지하나(25만 여명) 장기체류외국인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2006년 66만 여명에서 2010년 100만 여명), 이는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② 체류외국인 수가 많은 출신국가는 중국(60만여 명), 미국(12만7천여 명), 베트남(10만여 명), 일본(4만9천여 명), 필리핀(4만 7천여 명), 태국(4만4천여 명) 순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이는 2006년 수치에서 각기 59%와 89%가 증가한 것이나, 다른 나라는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③ ② 중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출신 여성들이 한국 입국시 가장 많이 발급받은 비자는 아래 도표와 같다. 모두 11개의 비자유형이 등장하는데, 결혼이나 가족관계로 온 F유형비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고, 미숙련직종의 취업을 위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가 다음으로 많다. 그 외에는 출신국가별로 각기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유학, 일본은 관광통과, 필리핀은 예술홍행, 태국은 사증면제가 많다.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는 비자 중 필리핀여성이 많은 예술홍행 비자만이 취업용이다.

출신국	여성수 (여성/전체 %)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전체	554,497 (44%)	방문취업 H2 (131,249)	거주 F2 (117,209)	재외동포 F4 (43,023)
한국계 중국인	198,791 (48.6%)	방문취업 H2 (127,222)	거주 F2 (24,111)	방문동거 F1 (8,163)
중국	103,863 (52%)	거주 F2 (30,328)	유학 D2 (27,157)	단기종합 C3 (16,695)
베트남	46,993 (45.5%)	거주 F2 (34,613)	비전문취업 E9 (6,116)	유학 D2 (1,104)
일본	30,430 (62.2%)	관광통과 B2 (16,129)	영주 F5 (5,232)	거주 F2 (4,499)
필리핀	20,122 (42.6%)	거주 F2 (7,066)	비전문취업 E9 (4,164)	예술홍행 E6 (2,862)
태국	15,646 (35.4%)	사증면제 B1 (8,738)	비전문취업 E9 (3,713)	거주 F2 (1,989)

자/ F1(방문동거):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F2(거주): (가)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조 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종사자 제외/ F5(영주): (나)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로 2년이상 체류시 또는 대한민국 출생으로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시 부모는 모가 영주권자로 체류중인 자/ H2(방문취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별도표시 활동범위내에서 체류하려는자로 법무부장관 인정을 받은 자, F4제외.

④ 2010년 미등록/불법 체류자수는 16만8천여 명으로 전체체류외국인수의 13.4%를 차지한다. 미등록체류자 중 여성비율은 35.7%로 전체 체류자중 여성비율인 44%보다 낮다. 미등록/불법 체류 여성의 수가 만 명 이상인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로 ➁에서 미국과 일본이 빠지고 태국과 몽골이 포함되어 모두 아시아 국가다. 이들 5개국출신 미등록/불법체류 여성의 수와 비자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기종합과 비전문취업, 거주 비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나머지는 역시 국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 여성은 단기상용과 관광통과, 필리핀여성은 예술홍행, 태국여성은 사증면제자인 미등록/불법체류자 수가 많다.

출신 국가	전체 불 체자 /전체 %	여성 불 체자/ 여성전 체 %	‘불법’체류 여성수 (여성불체 자/전체불체 자 %)	1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2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3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전체	13.4%	10.8%	60,132명 (35.7%)	단기종합 C3 (14,832/ 47%)	거주 F2 (9,026/ 7.7%)	비전문취업 E9 (8,797/ 35.6%)
중국	26.7%	18%	18,718명 (35.5%)	단기종합 C3 (6,013)	단기상용 C2 (3,179)	관광통과 B2 (2,660)
한국계 중국인	5.7%	6.2%	12,356명 (53.4%)	거주 F2 (2,498)	비전문취업 E9 (2,495)	단기종합 C3 (2,452)
베트남	14.9%	12%	5,665명 (36.7%)	거주 F2 (2,690)	비전문취업 E9 (1,345)	단기종합 C3 (832)
필리핀	23.8%	26.2%	5,270명 (46.8%)	단기종합 C3 (1,646/ 67.9%)	비전문취업 E9 (1,383/ 33.2%)	예술홍행 E6 (1,188/ 41.5%)
태국	28%	33.7%	5,265명 (42.4%)	사증면제 B1 (4,306)	비전문취업 E9 (749)	거주 F2 (162)
몽골	36.4%	37.3%	4,910명 (45.1%)	단기종합 C3 (2,277)	비전문취업 E9 (800)	단기상용 C2 (693)

두 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눈에 띈다. ➀ 최근 한국의 체류 외국인 증가추세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수의 증가가 중요하다. 이는 한국정부가 동포대상의 이주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이므로, 다문화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동포의 상황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➁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 아시아인 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불법’체류비율은 10% 이하이다. ➂ 여성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비율은 전체수치보다 낮은 편인데, 거주비자 입국

자 수가 많은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필리핀과 태국, 몽골출신 ‘불법’체류자 중 여성비율은 전체수치보다 높다. 이들 여성의 ‘불법’체류 상태는 단기종합, 비전문취업,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임금노동을 위해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은, 다른 동남아 출신들과 비교할 때, 가장 일찍이 이주해왔으며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미등록 상태로 장기체류하는 3D업종 종사자, 예술홍행비자를 가진 연예노동자,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결혼이주자, 라는 세 유형의 한국내 필리핀 이주여성 집단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 개인’과 ‘방문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미등록체류의 ‘불법성’에 대해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가?(가족내 성역할이나 연예노동에서) 여성적 특징이 개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지 또는 비판되어야 하는가? 여성의 성성이 가족 재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상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결혼상태가 간이귀화조건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방문국의 페미니스트 시민’이 ‘이주에 대해 젠더 평등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2. 필리핀의 여성이주

필리핀은 오늘날 대표적인 해외이주노동자 송출국가이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 해외체류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의 국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국내의 가족 및 친족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나아가 후속 이주자들의 중개 역할도 담당한다. 2007년 이래로 백만 명을 넘어선 정부 등록 해외노동자수는 2010년도에는 1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과 맞먹는다(POEA, 해당연도). 해외거주 필리핀인은 2009년도에 85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9.1%에 해당한다(POEA, 해당연도). 필리핀은 여성이주노동에서도 대표적인 송출국가이다. 신규해외노동자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줄곧 50% 이상이며, 2000년대 전반기에는 70%에 육박하였다(POEA, 해당연도).

필리핀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로 해외에 나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동의 오일붐 시기이다. 한국도 당시 비슷하게 해외 이주노동정책을 시작하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한 것에 비해,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

였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해외이주노동을 지지하여, 일찍이 1982년에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설립하였고, 1986년에는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을 세워 해외필리핀노동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해외송금액은 수출액의 37%에 달할 정도로 가계 및 국가경제의 해외이주노동 의존도 증가하였다(NSO, 해당연도).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3백 년 이상 지속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상적이거나 생활방식이 서구화되었고 영어 사용능력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월하다. 또한 역사의 밑바닥에는 양성을 상호보완 관계로 보는 상대적으로 성 평등한 토착문화 전통이 있으며 식민지배 이전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였다. 근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수용정도가 높다는 점도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이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도 해외이주노동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중산층 가족의 소비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성원의 송금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누군가가 항상 해외이주노동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필리핀의 여성이주노동자는 위계화된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오늘날 필리핀 여성들은 중동과 아시아, 유럽, 미주 각지에서 가사노동자와 간병인, 간호사, 엔터테이너 등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신규 가사노동 해외노동자는 9만5천여 명으로 신규 여성해외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필리핀에서는 학교 교사에서부터 공무원, 사무직원, 판매직원, 공장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여 임금이 높은 국가로 가서 일을 할 경우 허용되는 일자리는 방문국의 여성이 기피하는 전근대적 성격의 고용관계이거나 저임금 서비스 직종이다.

오이시(Oishi, 2005)는 아시아에서 출신국가의 이주노동정책이 여성이주노동의 양상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적법성”(social liability)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은 이주노동자의 수는 많지만 여성의 비율은 0.3%(2002년 수치)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국가가 여성의 해외이주노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Siddiqui, 2005; Sikder, 2008). 반면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해외이주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에) 65% 이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여성의 해외 이주 경제활동을 허용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출신국의 정책이 여성이주에 대한 사회적 허용정도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양적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면, 방문국의 정책은 이주여성들의 종사 직종과 체류방식을 크게 좌우한다. 필리핀 여성들이 입주가정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방문국에서 그런 직종에서만 이주여성의 노동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필리핀 엔터테이너 사례도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일찍이 1981년부터 필리핀 여성에게만 특별히 필리핀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식으로 엔터테이너의 노동이주를 허용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담당부서를 해외고용청(POEA)에서 교육부로 바꾸면서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노력의 표시를 하였으나, 중개브로커의 역할만 키워주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가 일본 연예이주자 상황을 비판하자 일본정부는 2005년 3월 15일 이후로 더 이상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다(Parreñas, 2011: 32-35). 그 결과 2004년 7만여 명으로 증가했던 일본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수는 2006년에는 6천 6백여 명으로 급감한다(POEA, 해당연도).

많은 나라에서 이주노동의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 중에는 방문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은 1989년 7,819명에서 2010년 19,776명으로 21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은 1990년에 77%, 1991년에 30%로 1990년대 초에 특히 높았다(CFO, 해당연도). 그동안의 누계 건수를 보면 상대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미국이 42%로 제일 많고 일본이 28%로 그 다음이며, 호주와 캐나다, 독일이 각기 16% 정도를 차지한다. 이어서 대만과 영국, 한국이 각기 2% 정도이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전체건수 중 비중은 낮지만, 1989년 4명에서 2010년 1,694명으로 무려 423배나 증가하여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 필리핀 국제결혼의 91.4%는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며 거의 대부분 필리핀 여성이 외국인 남성의 나라로 이주하여 생활한다. 그렇지만 결혼이주를 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은 국내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가족 초청을 하거나 노동이주자의 정착을 돕는 식으로 후속이주 과정에서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필리핀 측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차별적인 젠더문화와 식민경험의 역사가 여성이주의 증가현상과 조응하고, 방문국의 상대적으로 더 차별적인 젠더문화와 신식민주의적 태도는 이들 필리핀 여성이 덜 근대적 여성노동이나 가족관계에 편입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임금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경제적 지위가 이주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국가 위계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3. 한국 내 필리핀 이주여성의 세 가지 상황

1) 미등록 장기체류 '3D'업종 종사자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산업구조와 고용상태는 많이 변화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 소위 '3D(difficult, dangerous, and dirty)' 업종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줄어들어 소규모 영세공장은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직과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 들어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정부에서는 외국노동력 수급정책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이고 작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내 필리핀 여성의 미등록 비율은 남성보다도 높다. 정식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사람의 대다수(2010년 경우 84%)가 남성인 상황에서 필리핀 여성의 상당수는 미등록 체류상태로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용허가제로 와서 체류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많은 수는 관광비자에 해당하는 단기종합C3 비자로 입국한 후 공장노동을 한다. 한국내 C3소지 필리핀인 중 여성비율은 53%로 이미 높은 편인데, C3소지 여성 중 '불법'체류의 비율도 68%로 무척 높다(외무부, 2010). 이들 미등록체류여성의 많은 수는 다양한 미숙련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자가 조사했던 경기도 A공단은 미등록 체류자들이 모여드는 게토 같은 곳인데, 여기서 10년 이상 일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래에서는 이 A공단에서 조사했던 미등록 장기체류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소개해보겠다(김민정, 2011).

A공단의 노동상황

경기도 A공단은 1980년대 초 지역에 가구공장이 들어서면서 공단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1990년대 말 IMF 위기로 주춤해졌고, 2004년경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작으로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단 사정은 확연히 어려워졌다. 이에 2000년대 초 500여개에 달하던 공장 수는 현재 300여개로, 천여 명에 달하던 이주 노동자수는 5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미등록체류자의 비율은 80%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10년 이상 체류한 장기거주자들이다. 이주자의 수가 많은 출신국가는 방글라데시, 필리

핀, 네팔 순이며,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들도 있다. 준다. 한편 지역 활동가들은 공단 이주노동자의 여성비율을 40%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남자들이 다수인 국가 중 방글라데시나 네팔 여성은 거의 없으며, 공단 내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당시 현지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공단 내 B교회에 나오는 필리핀 여성 6명을 서너 차례 심층인터뷰하고 이들의 필리핀 내 가족을 현지방문 인터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원단체 활동가와 공단 관계자 인터뷰, 성당 및 의료봉사 활동 관찰도 진행되었다.

A공단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90-12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가구공장이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였다. 이들의 월급은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직 월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한국경제 2011. 12. 26), 공단 내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도 20% 정도 더 낮다. 이들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고, 보통 남성보다 더 단순업무를 맡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더 쉽게 일감이 끊겼다. 또한 성적희롱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더 자주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것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공장 이외의 일자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일자리 선택의 폭이 더 좁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아이보기나 중환자를 돌보는 입주 간병인 일이다. 아이보기는 종일 눈길을 주어야 하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거나 유아기 아동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봐줄 필리핀 유모를 구하는 경우였다. 중환자는 보통 먹이고 입히고 씻겨야 하는 반신불수 환자인데 입주간병인으로 일할 경우 공장 임금보다 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아이들은 필리핀에 두고 와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중환자들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면 처신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무조건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공장일 중간 중간에 찜질방이나 노인요양원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등록체류의 역설

사례연구 대상자는 모두 미등록 체류를 걱정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단속으로 강제 추방될 위험을 감내하고 미등록 체류를 결심한다면, 일자리도 옮길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되는 서비스직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주자의 기본 인권은 불법의 길을 택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애초에 미등록체류를 걱정하고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 이미 일하고 있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역시 이후에 여동생이나 아들 등 다른 가족원을 불러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18년 동안 머물면서 단

한 번도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50대말의 여성은 나중에 이주한 아들과 아들이 한국에서 낳은 손자와 함께 3세대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거관계도 생겨나는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필리핀인 집단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편이다. 동거는 특히 여성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편이었다.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정부의 단속방침은 사실 모든 미등록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서는 2012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수를 15만 명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10. 26.). 이들의 저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 영세공장이 문을 닫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례 연구 공단에서 2005년도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을 때 공장을 운영하거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 주민들은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즉 이주노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에는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집단을 저가 노동력 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 대상의 필리핀 여성들이 미등록 장기체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 필리핀 여성이주 노동자들은 단속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한국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면서 격리된 삶을 산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합법적인 노동이주자가 누릴 수 없는 ‘역설적 자유’를 누린다. 일단 ‘미등록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단속의 위협을 피해 나갈 수만 있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업장이나 직종을 옮기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중적 이주노동정책이 허용하는 미등록 체류의 공간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역설적인 ‘불법의 자유’를 찾아낸다.

2) 예술흥행 비자소지 이주노동자

1980년대 말까지만해도 한국의 연예유흥 산업시장은 빈약했고, 주요고객은 일본인 관광객과 미군, 일부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 들어 연예유흥 산업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군기지 주변 클럽 소유자들이 중심인 이익단체에서는 정부에 로비를 하여 1997년부터 러시아나 필리핀 댄서 같은 외국인 여성 연예노동 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90년에는 500여 명에 불과하던 연예이주노동자의 수가 2002년에는 5천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여성비율은 31%에서 84%로 급증하였다(김민정,

2009: 221-222).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노동이주자는 호텔에서 공연하는 필리핀 남성뮤지션 중심의 다인조 밴드였으나 외국인 여성 댄서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논란이 불거지면서(여성부, 2003), 2003년 6월부터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무용수’에게는 비자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관광업소로 등록된 곳과 계약을 맺은 공연자에게만 호텔홍행비자(E62)를 발급하였다(김민정, 2009: 224). 비자 규정을 바꾼 이후 연예이주자의 78%가 필리핀인이고 필리핀 연예이주자 중 여성이 89%일 정도로 한국의 연예이주노동 분야는 ‘필리핀여성화(Filipina-ization)’가 되었다(외무부, 2010). 아래에서는 필리핀 예술홍행 비자 소지자들의 상황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반복이주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여성직종인 예술홍행 비자 이주노동의 함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산업, 성매매의 문제

필리핀 연예 이주노동에 대해서는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나 개선방안의 문제(여성부, 2003; 설동훈외, 2011) 또는 ‘예술홍행 사증 외국인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국가인권위, 2008). 이들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집에서 관심의 초점은 ‘기지촌’ 클럽이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에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피고용자는 필리핀 여성이다. 최근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는 노래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여성들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질문지조사 대상자의 54%, 면접대상자의 67%가 필리핀 여성이었고, 이들 거의 전부는 예술홍행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기지촌과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로는 에이전시에 의한 통제, 고객에 대한 성적서비스에 대한 강요, 의료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 등이 있다.

2010년 출입국외국인통계에서는 예술홍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41.5%가 ‘불법’ 체류상태이지만, 2011년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면접대상자 14명은 모두 합법적인 체류상태였다. 5명은 E6 비자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명은 체불임금이나 소송 진행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기타비자G1를, 3명은 주한미군관련 자에게 발급되는 협정비자A3를 가지고 있었다(설동훈외, 2011: 13).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 모집단을 대표하는 인터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지촌이나 외국인 전용업소의 성매매 실태를 ‘불법체류’ 상태나 협소한 의미의 ‘인신매매’ 결과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 보고되는 여러 문제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와 에이전시 등을 통한 합법적 이주와 고용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수준만 봐도 정식 예술홍행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의 상황은 다른 업종이나 국적출신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클럽이나 바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은 월수입이 138만원이지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한국계중국인 여성은 214만원,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태국이나 러시아 여성은 288만원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외, 2011: viii). 즉 합법적 체류자격이 실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커미션을 떼는 에이전시를 통해 간접 고용되고, 클럽이나 바에서 일하는 소위 ‘GRO’(guest relations officers)의 경우 음료와 술값에서 받는 비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최저 판매할 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못해 이차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라이브바 가수의 상황

예술홍행 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많은 수는 관광업소로 등록된 호텔이나 나이트클럽의 라이브 무대에서 가수와 반주자로 일하고 있다. 정식통계를 낼 수는 없었지만 발표자가 (2008년 조사 당시) 개인적으로 방문했거나 이야기 들었던 서울의 주요 호텔들(하이얏트, 롯데, 로얄, 프린스 등등)만 해도 모두 다 필리핀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이트에 소개된 업체현황에 의하면(2012년 4월 검색), 특1급과 특2급, 1급 호텔은 전국에 모두 311개가 있다. 이들 업소에 최소 2명의 필리핀 여성이 공연하고 있다고만 쳐도 622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여기에 기타 대규모 일반 나이트 클럽이나 라이브 클럽을 고려한다면, 2010년 2,862명의 예술홍행 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최소 천 명 정도는 음악공연을 주로 하는 엔터테이너라고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2008년 7월부터 12월 사이 한국의 4성과 5성급 호텔 펍의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2명의 필리핀 여성을 심층 인터뷰하여 논문을 쓴 바 있다(김민정 2009). 당시 실제 공연무대와 거주하는 숙소, 주변 지역도 방문하여 관찰하고 다른 필리핀 밴드들이 공연하는 호텔 펍도 방문조사하였다. 또한 80년대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필리핀 음악인 2명과 한국 업소의 스태프, 바에 온 한국인 손님들도 인터뷰하였다. 이후 2011년 5월에는 중국, 일본, 중동 등지로 공연계약을 맺고 나가기 위한 대기시간에 필리핀 앙헬레스시의 라이브 바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 보컬 5명을 심층인터뷰하였다. 여기서는 발표자의 2008년도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라이브바 가수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 연예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호텔과 카페의 라이브 무대가 늘고 컴퓨터 반주음악의 도입으로 대규모 악단 없이도 라이브 무대의 연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필리핀 여성 가수와

뮤지션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기회가 주어졌다. 업주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대규모 밴드보다는 솔로나 듀오팀 고용을 선호하는데, 필리핀 여성들은 연예노동 이주자로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일찌기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미국의 재즈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아시아 특급호텔의 라이브 바를 석권하고 있다(Yu-Jose 2007; Ng 2005; Linmark 1995). 이러한 필리핀인의 연예이주는 오랜 스페인 지배로 인한 서양 예술계로의 이른 진입, 미국 지배를 통한 대중음악 학습과 미군기지에서의 공연 활동, 마르코스 시기에 시작된 필리핀의 인력수출정책, 필리핀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친근한 국민성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09: 220).

게다가 여성 가수는 남자톤이나 여자톤으로 작곡된 노래 모두를 부르는데 더 유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출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바 고객의 다수인 남자 손님들의 시선을 끄는데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더 선호한다. 나아가 여성 가수들은 남성 가수에 비해 에이전시나 매니저의 요구에 더 순종적이고 공연방식을 두고 스텝이나 손님들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한다. 즉 업주들의 여성가수 선호로 한국의 연예이주 노동분야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구직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규모 혼성밴드시절의 남성 가수에 비해 오늘날의 여성가수는 에이전시와 매니저, 업주, 스텝 등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더 착취적일 수 있는 노동조건 속에 놓여 있다.

연예 이주노동자는 필리핀에서 매번 출국 때마다 오디션을 보고 프로모션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에 와서도 매 세 달에서 여섯 달 간격으로 업소를 옮기면서 일해야 한다. 업소가 바뀔 때마다 숙소도 바뀌고, 무엇보다 저녁부터 이른 새벽까지 공연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 공연시간 자체도 6-7시간으로 상당히 길며 공연 전 준비 시간, 곡을 연습하는 시간 등을 합하면 꽤 장시간의 노동이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항상 밝게 웃고 춤을 춰야 하고 단골손님들 관리를 위해 살갑게 응대하는 감정노동의 업무도 만만치 않다.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잦은 이사로 한국 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힘들며, 다른 필리핀 이주자들로부터 편견어린 시선을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동정심으로 포장하여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남성 고객의 유해한 의도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가수들은 자신의 일이 즐거운 일이고 재능을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특히 화장을 하고 예쁘게 가꾸고 호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선망하는 시선을 즐길 수 있는 자신들의 처지는 공장노동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손님들을 성적으로 상

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보이고, 재능을 인정받고 운이 좋으면 정식 뮤지션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가진다. 연예이주 노동자 여성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변의 도덕적 의구심 등을 떨쳐내기 위해 특정한 방식의 감정적 무장을 필요로 한다.

합법 체류자격의 함정

호텔유흥 비자는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합법적인 반복이주가 가능한 직종이지만, 앞서 보았듯이 여성들의 절반 가까운 수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지낸다. 이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이 주는 안정성은, 방문국의 차별적 이주 정책보다는 고용관계를 중개하는 에이전시와 매니저에 대한 종속성으로 인해 훼손된다. 연예이주노동자들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한국의 업소주인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한국의 에이전시에 속한 매니저이다. 매니저와 맺는 계약서 상의 월급이나 숙박비 등 내역은 업소가 지불하는 것과 다르며 매니저와는 백지 계약을 하는 실정이다. 한 업소의 고용기간은 3-6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데, 2년 체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월급을 늦게 주거나 못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08년의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도 임금체불로 G1 비자를 받아 연장체류 중인 상태였다.

에이전시의 매니저는 고용주를 찾아서 알선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예이주 노동자의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은 실제적 고용주와도 같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할당금의 형태로 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가져간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뿐 아니라 향후의 새로운 이주노동 기회도 에이전시의 매니저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연예이주 여성들을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관계에서의 모순은 여성 정책 논쟁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 자비로운 온정주의(benevolent paternalism)의 기조로 무마된다. 즉 합법적으로 반복이주를 할 수 있는 연예이주 여성의 노동과 체류 상황은 실제로는 미등록 체류자보다 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에 파레냐스는 일본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상황을 인신매매와 노동이주의 중간지대에 놓인 “도제계약적 성격의 이동”(indentured mobility)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유를 상실하는 댓가로 경제적 상승 기회를 얻는 모순적 지위를 특징으로 한다(Parreñas 2011:7).

3) 결혼이주자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역할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혼인연령이 올라가고, 이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수치적 변화가 주목된다. 가족이 양육을 전담하고 병약자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한국사회에서 증가한 국제결혼이 보여주는 성비 차이는 결혼이 가족 내 성별분업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10배 증가하여 전체결혼건수 중 13.6%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거의 50배 증가하여 전체 국제결혼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외무부, 해당연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상황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한국에는 모두 21만 여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데, 이중 한국계중국인이 30%, 중국인이 27%, 베트남인이 20%이고, 필리핀인은 6%로 국가별로는 세 번째 순위이다(행정안전부, 2011). 베트남여성의 결혼이 2000년대 중반 들어 급증한 것과 달리 필리핀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주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필리핀여성의 결혼유형은 보다 다양하다. 대체로는 통일교회의 중매, 아는 사람 소개, 사설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한국 남성의 필리핀 방문시 연애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은 영어구사능력과 가톨릭 연망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학력도 높은 편이어서 공장과 식당일을 벗어나 영어 강사 등의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시에 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후보로 지명되어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귀화외국인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다. 하지만 역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가장 더디게 배우고 한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수적으로도 증가한 몽고나 베트남 결혼이주자들의 대외활동이 느는 추세이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김민정 외, 2006; 김민정, 2007; Kim MJ, 2010),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필리핀을 위시하여 아시아에서 온 아내들의 ‘다수’는 수도권 중하층 가족이나 농어촌 가족에 편입되어 가사노동과 노약자 돌보는 역할을 전담한다. 이혼후 어머니가 집을 떠난 중하층 가정에서 아이들 아버지의 새 배우자나 아이들을 맡을 미혼 작은 아

버지의 배우자로 아시아 여성을 선택하여 양육을 맡기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남 남성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도 한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중병이거나 알콜 중독인 성인남성을 돌보기 힘든 가족들이 문제를 속이고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수의 결혼이주자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나 간병 등을 서비스로 구매할 경제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층 가족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의 논리는 실상 결혼 일반에도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국제결혼 유형에서는 제3자(통일교회나 결혼중개업소 또는 아는 사람)가 개입하여 며칠에 불과한 만남과 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한국남편이 소요비용 일체를 대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도구적 측면과 가족 내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차별적 논리가 더욱 부각된다.

국적취득의 한계

한국에서는 결혼이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기회가 제한된 노동이주 대신 결혼이주를 택하여 해외이주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한국계중국인에게 안정적 취업기회를 열어준 방문취업제가 2007년에 시작되자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자가 줄어든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일본과 미국출신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2-3%로 상당히 낮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원칙상 모든 한국귀화자는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한국국적취득이 더 유리할 경우에만 귀화하기 때문이다.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중 귀화비율은 40-5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필리핀은 그 중간인 38%이다(행정안전부, 2011). 결혼 후 귀화신청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출신 배우자의 귀화비율이 중국보다 낮은 것은 뒤늦게 결혼한 건수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귀화자 중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미국이 10%로 가장 낮고 일본과 중국은 50%와 59%이지만, 필리핀과 동남아전체는 94%이다. 동남아 출신 이주자는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국가위계가 낮은 나라 출신일수록 국적취득을 통한 체류자격 안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경우일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취득이 어렵다. 결혼을 통한 간이귀화신청을 위해서는 은행잔고와 남편의 보증이 필요한데, 때로는 아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남편들이 협조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남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을 때에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외국인 아내의 체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결혼을 통해 이주하더라도 국적취득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체류자격이 안정되더라도 한국생활 자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출신이

라는 점뿐 아니라 아내라는 위상 자체에 대해 이해심이 부족한 한국 남편이나 불평등한 시대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일차적인 생활조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바깥일을 해서 양육비도 보태고 필리핀 친정집에 송금도 계속 하고 싶지만, 가사일의 부담이 클 뿐더러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영어강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교육경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영어강사 명목으로 채용해서 허드렛일을 같이 시키곤 한다. 정부에서 만든 원어민 교사직도 있지만 자리가 적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실제 대부분의 이들에게 허용되는 일은 일반 이주노동 여성들이 하는 공장일이나 농촌의 일용직 하우스일, 식당일이나 파출부일 등이다.

한편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필리핀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송금도 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먼저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여성이 자기 자매나 여자사촌에게 한국 남성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방문비자를 신청하기도 한다. 즉 결혼이주 여성들 역시 필리핀인의 연쇄이주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

이들이 한국인의 아내이고 어머니로서 나아가 귀화한국인이 되더라도, 일반 사회현장에서는 동남아 이주노동자 집단과 별반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다. 길이나 전철, 가게 등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치는 필리핀인이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인지, 합법적 노동이주자인지, 아니면 미등록체류자인지를 알아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인의 존재에 대해 막연히 불안을 느끼는 일반 대중이라면, 마주친 외국인을 일단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한 인식방법이라 생각할 것이고 귀화 필리핀인들도 이러한 차별적 시선을 피할 길은 없다. 물론 주변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은 한국가족원이고 여성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종의 온정주의적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한 존재로 차별받건 불쌍한 존재로 동정 받건, ‘인종’과 ‘출신국가’의 차이를 이유로 온전한 시민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로살도(Rosaldo)는 문화적 시민권을 ‘불리한 주체가 주류사회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본다. 즉 시민권은 법적 서류를 소지하여 국가와 맺는 관계뿐 아니라 이웃, 학교, 병원, 직장, 자원봉사단체 등 동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Rosaldo, 1994). 한편 옹(Ong)은 로살도의 관점이 이민자 집단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고, 문화적 시민권을 주체형성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체제 내의 위치에 따라 인종적 서열이나 문화적 차이를 등급화하는 시도에 대해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 중 가난한 자와 부자는 각기 다른 대응과 전략을 구사한다. 문화시민권은 국민국가와 사회에 결부된 권력의 망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들어나가는 이중의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Ong, 1996: 738).

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은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강조할 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가족내 여성 역할을 한국 문화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진행된다는 상징적 실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당 비례대표제 자리나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직에 결혼이주여성이 추천된다. 경찰서 외사과에 필리핀어 자리가 새로 생겼을 때에도 결혼이주여성이 선발되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성공한 결혼이주여성’으로 자리매김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적 도덕과 가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한국 내 혼인귀화 필리핀 여성의 문화적 시민권은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인식되고 있다.

4. 이주 지속의 기제

필리핀 여성이주자의 많은 수와 사회와 가정 내의 역할에서 짐작되듯이,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집안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여성이주자들이 있고 최소한 이주생활 경험을 전해들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 이주가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는 소위 “연속이주”(chain migration)이다. 즉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주하고, 이 이주자가 다시 새로 오는 다음 이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 내 필리핀 이주여성 중 미등록 체류집단의 경우는 특히, 가까운 가족관계 내에서 연쇄이주가 이루어진다. ‘불법’을 감수함으로써 실제 가족원들이 번갈아 이주하며 함께 살거나 유사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미등록상태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보인다.

한편 한국 내 필리핀 연예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반복이주가 보장되지만 고용계약과 노동상태에서의 자유가 현저하게 제약되는 방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빠레냐스는 일본 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상황을 “도제계약적 이동”(indentured mobility)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예술홍행 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여성들이 미등록체류자로 남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자유가

제한되고 착취적인 고용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사회 내에 ‘불법적’ 성산업 시장의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이주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의미에서건 ‘도제계약적 성격의 이동’을 하며, 그 이동조건은 시민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미등록 체류자의 시민권이 불법성과 협상되어야 한다면, 합법체류자의 시민권은 국가의 지배가치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Parreñas, 2011: 12-14). 그렇기 때문에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화적 시민권이 문제가 된다.

바시(Bashi)는 뉴욕과 런던으로 이주한 동부 카리비안 흑인들의 사례연구에서, 연쇄이주 방식보다는 중심인물이 여러 사람의 이주를 돕고 영향을 미치는 “바퀴살 관계망(hub and spoke network)” 방식으로 이주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Bashi, 2007: 80). 바시의 사례에서 이 관계망은 성적으로 차별적이지 않으며 방문지에서 이주여성의 일은 남성일보다 훨씬 더 독점화되어 있어서 여성의 이주 및 취업은 더 쉽다(Bashi, 2007: 150). 장기체류를 통해 이민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적절해보이지만 한국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적 취득으로 영구체류가 가능한 결혼이주자 집단도, 한국 남편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나서서 이런 식의 관계망을 구축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국제결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결혼의 중개방식도 다양하며, 전반적인 해외이주도 활발하기 때문에 바시의 설명이 일정 정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한국에 온 결혼이주자가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여성을 주변 한국 남성에게 소개하여 데려오는 상황은 드물지 않으며, 국적을 취득하고 오래 거주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주자 집단과 이주 패턴이 연결되어 바퀴살 관계망 방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한적인 시민권의 문제에 대처하는 이주자의 대응방안 중 하나는 어찌되었건 이주를 지속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쇄이주’가 이주를 지속시키는 주요 기제로 나타나고, 연예이주자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동일 인물이 ‘반복이주’를 한다. 바시가 언급한 ‘바퀴살 관계망’도 안정적 체류자격을 획득한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발견된다. 이주를 지속시키는 연망에서 성별을 차별하는 논리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이주자들이 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바퀴살 관계망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5. 이주정책과 젠더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내 필리핀 이주여성의 상황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의 전반적 증가로 오늘날 미등록 체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미등록 체류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주노동이 빈번한 필리핀 사회에서는 가족성원간 연쇄이주의 과정에서 미등록체류 여성이 매개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둘째, 유흥산업과 성적 서비스 시장이 극도로 성별화되어 있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연예/성 노동영역에서 이주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노트북으로 음악반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필리핀 연예노동자는 대규모 혼성밴드에서 여가수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상태와 노동조건은 더 취약해진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내 성역할로 인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결혼이주의 기회를 가지며 시민권의 포섭대상으로서 더 주목받는다. 하지만 성별 구분 없이 이주자 개인을 시민으로 보는 이주정책의 수립에 대한 무관심과 대비되는, 결혼이주 여성의 복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족내 가부장적 성역할의 지속 및 강화와 맞물려있음을 보여준다.

논의를 맺기 위해 서두에서 언급했던 질문에 대해 거칠고 간략하나마 나름의 답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 개인’과 ‘방문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볼 때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논리는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집단의 이해관계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의 체류상태의 합법성이나 국적취득 여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행복의 보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때는 체류권, 시민권, 인권의 이름으로 내용을 갖춘 법적 권리 형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등록체류의 ‘불법성’이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은 올바른가? 인도주의는 체류자격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 확립의 원칙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의미를 가진다. 상황적으로나 자의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평가, 변명, 요청하기 위한 심리적 상태로 접근할 경우 필요한 법과 정책의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가족내 성역할이나 연예노동에서) 여성적 특징이 개인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지 또는 비판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주체성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여성성의 전략적 추구나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러한 고민거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탈근대 한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여성의 성성이 가족 재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상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마돈나와 팜프 파탈이라는 상반된 여성이미지가 동일한 여성차별 이데올로기의 두 측면이라는 점을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혼을 막고 여성의 가족재생산 노동을 독려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논리의 위험성은 분명하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자라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불쌍한 것 등으로 정서적 이미지화하여 여성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은 여성에게서 더 약한 여성(가난한 여성, 외국출신 여성, 어린 여성 등)에게로 지속적으로 전가된다. 가족 지키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한, 가정 밖 여성이라고 낙인찍히는 성산업 여성종사자를 주체로 인정하면서 성산업의 여성착취적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은 어렵게 된다.

결혼상태가 간이귀화조건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혼을 한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을 더 쉽게 해주는 이유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소속감이 내국인의 안녕과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는 이상한 논리이다. 외국인이 귀화를 하면 바로 내국인이 되는데 그런 범주 전환만으로 갑자기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적취득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을 파악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묶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배타적 혈통원리나 고유의 민족성 논리가 배제된 말그대로의 ‘국민’과 ‘시민’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실정이다.

결국 ‘방문국의 페미니스트 시민’이 ‘이주에 대해 젠더 평등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민족주의와 성역할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성찰적으로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많이 아우를 수 있는 집단관계를 모색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다. 초국가적 관계가 늘어나는 이주의 시대에 여성이주자의 삶의 조건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국적취득 문제를 넘어 보다 광의의 시민권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목표는, 빠레냐스의 표현을 빌자면,²⁾ 여성이주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삶에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빠레냐스는 미국에서 제기한 인신매매 혐의로 일본정부가 필리핀 엔터테이너 비자법 규를 바꾸고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일본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직업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직업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Parreñas 2011: 24).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예술홍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8년 10월 22일.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쪽.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쪽.
- . 2009. 「한국 관광호텔 라이브 바의 필리핀 여가수: ‘뮤지션’과 ‘엔터테이너’ 사이」. 『동남아시아연구』 19(2). 219-251쪽.
- . 2011. 「필리핀 노동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생활: 미등록 장기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2). 313-358쪽.
- 설동훈 외. 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 「연합뉴스」(2009. 10. 26.), “불법체류자 감소에 따라.”
- 외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
- 「한국경제」(2011. 12. 26.), “중소업체 생산직 평균 임금 7% 상승”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2698331>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11. 『외국인주민현황자료 2011』.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허라금 편. 2011.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서울: 한울 아카데미.
- Bashi, Vilna Francine. 2007. *Survival of the Knitted: Immigrant Social Networks in a Stratified Worl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CFO(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each year), “Statistics/ Stock Estimates”, The Philippines, www.cfo.gov.ph.
- Kim, Minjung. 2010. “Filipina Wiv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Korea’s Changing Roles in Southeast Asia: Expanding Influence and Relations*, ed. by D. I. Steinberg, Singapore: ISEAS.
- Linmark, R. Zamora. 1995. “And the Next Song is for Everybody: Filipino Lounge Bands in Manila and Seoul,” *MUAE: A Journal of Transnational Production* 1. pp. 150-163.
- Ng, Stephanie. 2005. “Performing the “Filipino” at the Crossroads: Filipino Bands in

- Five-Star Hotels in throughout Asia,” *Modern Daram* 48(2), pp.272-296.
- 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each year), “Quickstat page”, The Philippines, <http://www.census.gov.ph/data/quickstat/altindex.html>
- Oishi, Nana. 2005. *Women in Mo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Ong Aihwa.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Current Anthropology* 37(5). pp.737-762.
- Parreñas, Rhacel Salazar. 2011. *Illicit Flirtations: Labor, Migration, and Sex Trafficking in Toky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EA(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OFW Statistics”, The Philippines www.poea.gov.ph/stats/statistics.html
- Rosaldo, Renato. 1999.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Rodolfo D. Torres, Louis F. Mirón, and Jonathan X. Inda, Malden (eds.), *Race, Identity, and Citizenship: A Reade*, Mass.: Blackwell.
- Siddiqui, Tasneem. 2005.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from Bangladesh: A Decent Work Perspective,” ILO Working Paper 66, Geneva: ILO.
- Sikder, Mohammad Jalal Uddin. 2008. “Bangladesh,”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7(3-4), pp.257-275.
- Yu-Jose, Nidia. 2007. “Why are most Filipino Workers in Japan Entertainers?: Perspective from History and Law,”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22(1), pp.61-84.

‘한국식’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시민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이주여성인권포럼)

1. 여는 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2006년 4월 정부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재원뿐 아니라 민간재원이 다문화사업에 투자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유치원,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교육이, 대학에서는 다문화 강좌가 신설되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미디어나 아카데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붐’ 현상은 얼핏 보면, 한국사회가 이주민 100만 명 시대¹⁾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주자들의 권리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주자의 시민권이라는 다문화 이면(異面)의 현실은 이런 낙관적인 평가에 선뜻 동조할 수 없게 만든다. 17만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강제추방이 지속되고 있고²⁾ 결혼이민자들이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도 꾸준히 재발하고 있다³⁾. 또한 최근 다문화 반대 카페들이 온라인을 벗어난 정치적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고⁴⁾ 다문화사업에 투자되던 민간재원들이 빠르게 철수하는 경

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인 1,308,743명이다. 이 중 단기체류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은 944,170명이다.

2) 2008년에는 32,591명, 2009년에는 30,229명, 2010년 10월까지 17,341명의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348) 단속과정에서 인권유린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온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2011년 5월에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후 19일이 된 아기를 남겨놓고 사망했다.

4)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다실련) 등 국내 다문화반대 단체 회원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아동권리모자법」에 반대하기 위해 2011년 4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고, 국제결혼 피해예방신고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는 6월 3일 KBS 본사 정문 앞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 ‘다문화주의’를 비판,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이런 현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틀일까? ‘한국식’ 다문화주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다문화정책은 이주자들의 권리 즉, 시민권 향상에 기여한 것일까?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관계는 무엇일까?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의 유행은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은 것일까? 이것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시민권과 다문화 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가족단위로 이주 후 유입국에 정착, 종족집결지(ethnic enclave)를 이루고 문화권을 주장했던 서구 이민자들과 달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임시체류자로 분류되며 결혼이주자만이 한국사회에서 정주가 가능한 ‘이민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이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인정(recognition)의 관점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악셀 호네프(Axel Honneth) 반면에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이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윌 킴리카(Will Kimlicka)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철학 안에서 논의되어져 온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본다. 둘째, 정부문건 및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시민권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보편적 시민권을 확대시키지 보다 결혼이민자 복지정책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분리된 범주로 구성해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근대적 시민권은 좁게

미화하지 말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 달라’는 주제로 향의집회를 열 계획을 추진 중이다(2011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는 ①법적으로 제도화된 정치공동체(국민국가)에서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정의되기도 하고, 이러한 법적, 형식적 개념을 넘어 ②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civil virtue) 및 연대와 정체성이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철우, 2008; 최현, 2008; Bosniak, 2000: 456-488).

따라서 시민권은 법적 이슈이자 동시에 문화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전자와 같이 시민권을 국민국가 안에서의 법적 지위로 한정시켜버린다면 시민권이 국적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칫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당연히 시민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국적 없이도 유입국 시민들에게 보장된 권리들(혹은 그 일부)을 누리고 있는 장기체류 이주민들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김비환, 2007: 330).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국의 시민이 될 자격을 갖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전히 국민국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또한 국가 중심의 시민권이 시민과 비시민인 이주자를 가르는 엄격한 잣대로 기능하는 현실에서 후자적인 시민권 개념의 확대해석은 오히려, 배제적 장치로서 시민권에 대한 비판 및 시민과 이주자 사이의 권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이철우, 2004; 이철우, 2008; Bosniak, 2000). 국적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배타적 태도로 인해 대부분의 권리항목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한국의 이주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주자들의 시민권 이슈는 전자적 정의에 더 부합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민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지위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한정해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민권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국적과 상당히 중첩된다. 하지만 시민권이 반드시 국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유럽인들은 개별 국민국가에 귀속된 국민이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이며,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해외 속령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은 부여하나 시민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철우, 2004). 또한 최근 글로벌 이동성의 증가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주는 확장되는 추세다.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점 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의료, 연금, 실업보험뿐 아니라 공공부조, 공공주택, 교육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에 거주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주자들을(장기체류자뿐 아니라 일시체류자라 해도) 포함함으로써 사회권을 확장시키고 있고, 지방자치 수준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참조할 것).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엔 외국인에게는 전통적인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자유권만을 인정하고, 정치권이나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로 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장서연, 2009: 172-174; 최유, 2009: 124).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적과 달리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비록 국적이 없는 이주자라 해도 자유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논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정치철학에서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문화권(cultural right)을 보편적인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해야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근대적 시민권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인간관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을 종족이나 인종, 종교, 문화, 계급, 젠더, 성적 정체성 등 개인적인 특수성과는 무관한 순수이성을 가진 보편적 존재로 보았다.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존엄할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인 보편적 시민권을 누릴 자격을 지닌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러한 근대적 이상이 확산되면서, 시민권의 담지자인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민주 정치공동체 내 모든 시민은 개인적 특수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非差別)의 원칙, 개인은 보편적 시민의 자격으로 공적 영역에 참여하며 문화는 사적인 문제라는 공/사 영역의 분리, 국가는 문화나 종교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일련의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정립되게 된다.

이와 달리 다문화주의는 ‘자아는 문화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특수한 에스닉 그룹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자아정체성에 있어 문화와 인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테일러는 인간을 보편이성을 소유한 원자적 개인, 문화와 무관한 추상적 개인으로 본 자유주의와 달리, 대화적(dialogical)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이 독백적(monological) 존재가 아니라 대화적 존재라는 것은 유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Taylor. 1994: 32-37). 테일러의 말대로, 문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이해의 토대라면, 또한 개인들에게 좋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레퍼런스, 맥락을 제공한다면, 문화는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조건이자 개인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호네프 또한 주체는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헤겔의 인정투쟁 모델과 미드의 사회심리학에 기반해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인정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상호인정의 첫 번째 형식인 사랑은 친밀한 관계를 벗어나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기믿음을 가지며, 이러한 믿음은 이후 다른 모든 상호인정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onneth. 1992: 173-187).

상호인정의 두 번째 형식인 권리를 통해, 주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법적권리의 담지자인 권리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주체가 스스로를 법적 인격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자신과 같은 법적권리의 담지자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주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며, 법적 인정을 통해 주체는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라는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Honneth. 1992: 188-208). 법 앞에서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 인격체로 인정받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두 번째 형식은 결국 인간존엄성의 원칙에 기반 한 근대적인 권리인정 체계 즉, 보편적인 시민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성에 기반 한 법적권리를 통해서는 동일성 즉, 평등을 보장받을 뿐 특수성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보편적 시민권과 달리,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주체의 특수성이나 차이에 대한 인정은 연대라는 세 번째 상호인정형식을 요구한다. 신분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했던 전근대적인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능력이나 속성을 중심으로 가치부여라는 치열한 인정투쟁이 전개되는데 가치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자아실현 방식이 공동체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업적의 평가에 의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자아실현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사회의 공통의 목적을 지배하는 해석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각 집단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업적과 기여를 가치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따라서,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지속적인 인정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Honneth. 1992: 208-217).

고찰한바와 같이 두 이론가 모두 인정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권리에 접근하지만 호네프는 인정이 필연적으로 투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든 문화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라”(Taylor. 1994: 62-73)는 당위적인 요청을 했던 테일러와는 구분되며,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관용을 넘어 이주자들의 권리와 연대를 향한 투쟁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인정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를 옹호했던 테일러나 호네프와 달리, 다문화주의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을 이론화한 킴리카는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문화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 안에서 자신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의미있는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회고유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인간은 문화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등 한 국가의 모든 제도는 특정 언어와 특정한 사회고

유문화(보통은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는 문화적 중립성을 가장하지만 사실상 다수집단의 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사회의 사회고유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온 소수자들이 주류사회가 누려온 것과 같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룹-차별화된 권리(group-differentiated rights)가 필요하다(Kymlicka. 1995: 75-106). 그는 문화적 소수자 집단에게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s), 다종족권리(polyethnic rights), 특별대표권(special-representation rights)이라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평등과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Kymlicka. 1995: 26-33).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그룹-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징적 인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소수집단의 문화적 생존(cultural survival)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고 공적자원을 투자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주류사회구성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누적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문화집단에게 공통된 시민권을 넘어서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내부구성원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과 충돌하기에,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⁵⁾.

프레이저는 테일러나 호네프의 자아실현 모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인정의 문제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인정과 재분배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정의의 중요한 두 차원임을 강조하는 인정 이론론을 발전시키는데(Fraser. 2003), 그녀의 논의는 다문화주의가 간과하기 쉬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경제적 부정의와 문화적 부정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분배의 정치는 인정의 정치를 허위의식으로 치부하고 인정의 정치는 재분배의 정치를 차이에 무감한 물질주의로 치부함으로써, 허구적인 이분법적 논쟁의 장이 펼쳐져 왔다(Fraser. 2003: 9-26). 이를 극복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Kymlicka(2002) 293~384 쪽,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은 Joppke(2002) 참조할 것.

하기 위해 그녀는 이차원적인(two-dimensional)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등한 참여(participatory parity)를 규범적 원칙으로 하는 지위모델(the status model of recognition)을 제안한다. 지위모델에서 인정에 대한 요구는 테일러나 호네트처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지닌 파트너로 사회에 참여하는 평등한 지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라면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결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 자원을 분배해야 하고(객관적 조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인정을 제도화해야(상호주관적 조건)한다(Fraser. 2003: 27-3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불인정(misrecognition)은 자아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기 보다 특정 집단이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이처럼 지위모델은 불인정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위치시킴으로써, 테일러와 호네트식의 도덕적 요청(불인정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한다)을 넘어, 제도적 변혁을 통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부정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Fraser. 2003: 37-42). 또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문화적 소수자들이 겪는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노동, 교육, 고용, 주거, 보건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고찰한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시민권이 성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고 발전되어져 온 이념으로, 이주자들에게는 마샬이 범주화한 보편적인 시민권의 세 가지 영역 즉, 자유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뿐 아니라(Marshall. 1950), 문화권(cultural right)을 시민권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의 권리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3. 시민권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복지정책으로서 다문화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일부지원 단체가 최초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이선옥. 2007: 83). 그러나 단기순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체는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민자들이었다. 2000년 6,945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에는 30,719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3월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9만 5천 명에 이른다⁶⁾. 이처럼 결혼이민자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였는데⁷⁾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때 마련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정책적 비전으로 내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은 다문화 교육 실시,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 구축 및 분위기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뿌리깊은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내용에 다문화교육요소를 반영하고(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문화’라는 용어는 정부관계자의 언설이나 정책뿐 아니라 관련 법안을 장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족’과 결합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 새터민, 화교는 한국사회의 ‘사실상의 다문화주의’(de facto multiculturalism)(Kymlicka, 1995)⁸⁾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다문화적 주

6)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결혼이민자 143,004 명이고, 혼인귀화자(전체누계) 51,733명으로, 여기서 결혼이주자라는 용어는 배우자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수치다.

7)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마련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은 이후 결혼 이민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주요내용은 ①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③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④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⑥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⑦추진체계 구축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①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②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③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 구축 및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과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안 참조.

8) 킴리카는 사실상의 다문화주의(de facto multiculturalism)와 공식적인 다문화주의(official multiculturalism)를 구분하는데, 사실상의 다문화주의가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인

체들이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결혼이민자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화교, 난민에게 더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의 범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상징하듯이, 이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이라고 지적한다(이병렬, 김희자. 2011; 원숙연. 2008).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문화의 유행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별화된 시민권’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들은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기에 보편적 시민권을 누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이들에게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특정한 권리들이 부여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김영옥, 2007; 김현미. 2008a; 김희정 2007; 문경희 2006; 허오영숙; 201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일례로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안은 다문화가족의 순기능을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협상하는 독립적인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의 시민권은 가족 및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논리에 갇히고 만다.

(1) 한국인 배우자에 ‘부착된’ 존재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F-2-1 비자)으로 삶을 시작한다. 국적법의 간이 귀화조건⁹⁾에 따라 혼인상태로 2년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정에 대한 요구처럼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적 다원주의를 의미한다면, 공식적인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공적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9) 1998년 개정된 『국적법』<간이귀화 요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 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 2항 제2호)’에게 국적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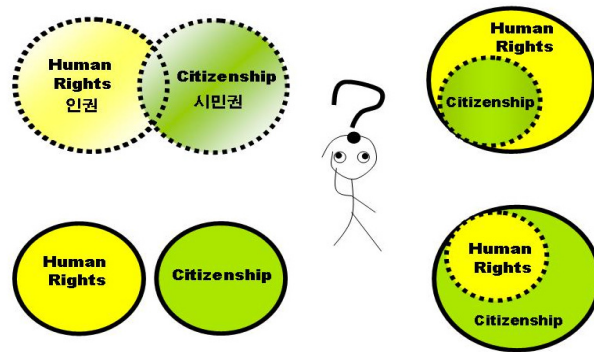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전까지 1년 마다 배우자 비자를 연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비자 연장 시 남편의 동행 및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국적을 신청했다 해도 심사기간은 2년 이상 걸린다. 이는 4~5년 동안 이들의 체류자격이 전적으로 남편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이주자 소위,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강제로 인해, 여성들은 학대나 가정폭력, 착취를 당해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더욱이 비자연장뿐 아니라 국적취득 또한 남편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에 의해 국적 취득 자체가 장기간 유보될 수 있다¹⁰⁾.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현행 국적 제도는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남편의 ‘사적 통치’ 아래 방치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조차 박탈당한 채 배우자에게 ‘부착된’ 존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ARENA(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베트남의 이주여성 관련 연구자, 활동가,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2009 지역학교: 아시아 결혼 이주자의 시민권 2009 Regional School on Citizenship of Marriage Migrants: A Platform for Research and Action> 오픈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은 이주여성들에게 시민권이 얼마나 절박한 이슈인가를 잘 보여준다. 오픈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에 관한 모형(<그림 1> 참조) 중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를 선택하고 토론을 벌였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위쪽 두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반면, 모든 결혼이주자들은 오른쪽 아래 그림을 선택했다(허오영숙, 2011: 73-74)¹¹⁾. 이는 체류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제약과 일상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자에게 시민권 없이는 인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배우자 비자(F-2-1) 연장과 귀화신청은 남편의 동행과 신원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력이나 성적,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라 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주여성지원 단체의 문제제기로 2004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소라미, 2007). 그러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고의로 국적 신청을 미루는 경우 국적법이 요구하는 체류기간을 충족시켰다 해도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1) 이는 2011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주최했던 학술대회 <지구화시대의 재생산과 시민권>에서 허오영숙이 발표했던 내용이다. 저자의 허락을 구하고 그림과 함께 재인용하였다.

<그림 1>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



이런 의미에서 현행 국적제도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통제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조장함으로써 국제결혼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적취득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남편을 매개로 하지 않는 안전한 체류와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자격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적취득은 자녀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한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자 어머니들은 이혼을 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혼 시 이주자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 이혼을 통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¹²⁾ 협의이혼이라면 미성년 한국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 언어적 폭력 등은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언어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이주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김현미 외, 2007: 159-160).

또한 법관들의 가부장제적인 인식으로 인해, 협의이혼 시 이주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확률도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혼 시 귀국준비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례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지침>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1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은 점 점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어렵게 법원으로부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판결문에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참고자료로 삼을 뿐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왜 한국에 남아야하는지 소명하라”는 추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김민정, 2010).

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국내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 일 때는 1회 1년 체류허가, ②국내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1회 2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를 허가한다(김현미 외, 2007: 159-160). 따라서 이주자 어머니들에게 이혼은 단순히 남편과의 법적인 혼인 상태의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혼은 자발적 귀환이든 강제추방의 형태든 자녀와 헤어져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이주자 어머니들은 자녀와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기보다는 자녀를 데리고 사라지거나 모국으로 귀환하곤 한다.

(2) 자녀양육의 논리에 간혀있는 ‘사회권’

한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면 이혼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국적심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현실은¹³⁾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에게 부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능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논리에 간혀있는 것은 비단 체류자격만이 아니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통해서만 사회권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확장을 이루지 못한 한국사회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복지국가 모델의 철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권 축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삶은 나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더욱이 국내법 상 사회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는 비국민(非國民)인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권은 더더욱 빈약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다. 이 법은 사회권 범주를 ① 사회보장권과 ② 사회복지서비스권 및 관련복지제도로 나누는데, 사회보장권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다.

이 법은 사회권 향유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은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이 법의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 현행 국적법에는 국적 심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 지원현장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1년 반, 아이가 없으면 2년 반”이라고 말할 정도다(허오영숙, 2011: 76).

최근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몇 몇 법들은 외국인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권리주체의 범위를 외국인에게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 사망, 사고, 실업 등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4대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배우자 비자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미등록이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어떤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혜자의 부담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방식인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굳게 닫혀있다. 다만, 2005년 12월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7년 1월 시행)이, 2006년 12월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2008년 1월 시행)이, 이후에는「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개방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06.12.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

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09.5.28]

이 세 가지 법 이외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가 무료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법」은 외국인과 관련해 난민에 대한 특례조항만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3조 수급권자 대상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한국인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자 어머니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소라미, 2009: 162).

결국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긴급복지지원법」만이 합법체류하는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확대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은 수급권 자격을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자 어머니’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나 아내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쉼터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¹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법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들은 이혼 후 어떤 사회권적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 8,300명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677명에 불과했고, 2010년에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7,904명 가운데 779명만이 자녀가 있었다. 이는 이혼한 결혼이민자 중 단 10퍼센트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90퍼센트에 달하는 여성들은 한국인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서 배제된다.

14) <표 2> 2002-2010년 연도별 여성결혼이민자 이혼 건수

(2010년 통계청 자료, 단위: 명)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표 1> 여성결혼이민자가 접근가능한 사회권

	사회보장 기본법		관련 법률 및 제도	적용여부		
				혼인관계유지	이혼	미등록
사회적 권리	사회 보장권	사회 보험	국민건강보험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		×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자녀양육시 ○)	(자녀양육시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
			(자녀양육시 ○)			
			긴급복지 지원법	○	×	×
			(직계존속돌보는 경우 ○)			
			의료급여법	×	×	×
			(자녀양육시 ○)	(자녀양육시 ○)		
	사회복지 서비스권 및 관련복지 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 (합법체류자만)	×	×

고찰한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내용은 철저히 성역할의 수행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인정받는 경우만 체류자격을 보장받는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이주자 어머니만이 미비하나마 사회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여성들, 그리고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가는 1만 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어떤 시민적 권리도 누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¹⁵⁾.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한국사회의 ‘책임의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및 인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해왔다. 특히 지자체들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 결혼비용까지 주어가면서 중개업체들이 인근

1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거주비자(F-2) 139,794명 중 합법체류자는 129,063명, ‘불법체류자’는 10,731명으로 미등록 비율은 7.7%다.

아시아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여성결혼이자들을 유입시키는데 공모해왔다¹⁶⁾.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말한다. “가족을 유지하고, 출산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하라. 아니면 돌아가라”고.

4. 복지서비스정책으로서 다문화 정책과 또 하나의 새로운 낙인, ‘다문화가족’

그러나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은 이른바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적조항(“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개별이주여성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며,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권이다¹⁷⁾. 어쨌든 이 법의 시행으로 45개의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37개에 불과했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1년에는 210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에스닉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찾기는 힘들다. 명칭과 달리 실제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지향하기에 그 내용이 ①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②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8조) ③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④아동보육, 교육 지원(제10조)등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모든 지원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구성된 임의조항들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의 유행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선점하려는 각 부처 간 경쟁이 맞물리면서,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표 3>¹⁸⁾에서 볼

16) 최순영 의원실의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2007년 6월 시점에서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24.7%로 지원예산만 무려 28억 5천만 원에 이른다.

1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뜻한다.

수 있듯이 2008년 813억이었던 중앙정부의 예산은 2011년 175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역시 994억 원에서 1534억 원으로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 대부분은 적극적 개방과 사회통합에 사용되고 있다¹⁹⁾.

<표 3> 2008-2011년 연도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예산
(단위: 억 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합계
2008	813	994	1807
2009	1111	2752	3863
2010	1174	1643	2817
2011	1751	1534	3285

출처: 외국인 정책위원회, <2008-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일례로 <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총 예산 3,284억 원 중 적극적 개방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1,073억 원(33%),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에 1,934억 원(59%), 이민행정에 172억 원, 외국인인권옹호를 위해 10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표 4>참조), 사회통합 예산은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임신출산양육지원서비스에 374억 원, 보육료지원에 235억 원, 언어발달 및 교육지원 사업에 100억 원이 투자되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2011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예산
(단위: 억 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합계
적극적인 개방	456.32	617.31	1073.63
질 높은 사회통합	1,065.88	868.28	1,934.16
질서있는 이민행정	147.08	25.30	172.38
외국인 인권옹호	81.75	23.03	104.78
합계	1,751.03	1,533.92	3,284.95

출처: 외국인 정책위원회, <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 18)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서울의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 사업’(1545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의 실제 예산은 1,207억 원이었다.
- 19)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크게 ①적극적 개방 ②사회통합 ③이민행정 ④외국인인권옹호로 나뉜다.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라기보다는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지 철회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자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처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초래된 중복지원의 문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복지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보육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원현장에서는 ‘과열지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 예산이 이주노동운동현장에 끼쳤던 악영향은 교육현장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사업 ‘대상’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어머니를 둔 한국인 아이들도 ‘다문화 아동’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다문화는 남아라”라는 교사의 발언이 회자되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그들을 ‘위한’ 정책적 수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허오영숙, 2011: 77).

경제적 부정의와 문화적 부정의는 긴밀하게 얽혀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기에, 프레이저는 “재분배 정책이 인정의 정치학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직접적인 재분배 형태로 경제적 평등에 기여하지만 수혜자들을 낙인찍음으로써 무시와 불인정이라는 또 다른 부정의를 낳는다(Fraser, 2003: 64-65).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재분배 정치학이 인정의 정치학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현행 복지체계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체도로 부터는 배제된 채, 특별법의 형태를 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설정된다. 이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결혼이민자들을 보편적인 복지체계로 포함시키면서 제도상 차별을 없애는 방식 즉, 보편적인 시민권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도상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임의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라기보다 국가로부터 특별한 시혜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킨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52.9%)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로, 실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의 저소득층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보편적 복지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사회권을 확대하기

보다 이들을 ‘다문화가족’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해내고 ‘보여주기식’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자가족을 더욱 타자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흔히 주체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극심한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지원이다. 그러나 이 양가적인 극단의 두 얼굴은 타인을 ‘나’와는 다른 열등한 타자로 대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래의 반다문화 인터넷 카페의 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의식을, 2008년 5월 5일 조선일보 기사를 참조하였다고 하는 서울시 한 초등학교 국어논술대회 문제지는 지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박을 보여준다.

- 인터넷 상 한 반다문화 카페의 글

지금과 같은 다문화 선동질 후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열등인종말상] 혼혈아 집단화 및 범죄화. 혼혈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해짐. 인종별로 계급화. 그리고 늘어나는 범죄와 사회갈등. 극우민족주의 정당 등장 후 극단적인 정책들이 생김.

[chatline] 아마 심각 하겠쥬~~ 정부도 손도 댈수 없을 만큼 이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땐 청년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뻔히 아시쥬?? 대책없는 다문화정책에 이 다문화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및 범죄자가 되겠쥬. 요즘 다문화정책으로만 사업을 벌여도 정부가 돈을 퍼줍니다.

[열등인종말상]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는 몰아내면 되지만 혼혈아는 강제로 쫓아내기 힘듭니다. 혼혈아들이 가장 큰 문제쥬

[엣지] 10년 후에는 아마도 달동네를 중심으로 싸움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네요.

[대구아기돼지] 불체자 및 혼혈아 증가로 필리핀, 남미처럼 치안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지금 거의 옹크리고 있는 국내조폭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80년대처럼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도 더 증가할 것이구요

-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국어논술대회 문제지

다음 글(가)와 글(나)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글(가)와 글(나)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가) 2000년 대 초반부터 국내 농촌 남성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가 어려워져 외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 아시아 여성들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

가난	절반이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있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의 비율이 낮음.
언어장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됨.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우리 언어나 글자를 가르쳐 줄 실력과 시간이 안 됨. 어머니는 우리말과 글에 서툴러서 자녀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기가 힘들.
소외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말과 글에 서툴러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은 결코 ‘우리’와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우리’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체 위치를 되비쳐 볼 성찰적 거울이 될 가능성을 삭제당한 채, 기의없는 기표로 떠도는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주자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을 타자화하는 이런 수혜적인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가시적이고 집합적인 저항으로 나아가고 못하고, 개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영옥, 2010 참조). 호네테에 따르면, 특정집단을 권리로부터 배제시키거나 가치절하하는 사회적 무시가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하는 것은 사회, 정치, 문화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시의 경험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공통된 집합적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Honneth, 1992: 267-277). 물론 결혼이민자들은 개별 가족 안에 고립되어 있기에,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집합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통해 시민사회로 확산된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을 탈정치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막강해 보인다.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과 사업이 몸집을 부풀리면서 결혼이민자들은 이주자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각하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이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지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항적 주체성이 발현되기도 전에, 이들이 막대한 다문화 예산의 대상 즉, 수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포섭된 결과다.

5. 맺는 글: 다문화주의를 넘어 정의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문화가 개인들의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토대라는 점을 인정하고(Taylor, 1994), 에스닉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생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들에게 공통의 시민권 이상의 그룹-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ymlicka, 1995). 그러나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명칭만 도용했을 뿐,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룹-차별화된 권리를 통해 에스닉 소수자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정책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감아먹는 국가의존적인 소수자’라는 부당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합리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막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에 기반 한 사회적 반발, 반다문화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치열한 논쟁과 철학 없이 국가주도적으로 시행되었던 다문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한국의 이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틀인가?” 다시 한 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 킴리카는 주류사회와 다른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자치권이나 특별대표권을 요구하면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내셔널 소수자들과 달리, 이주자들은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한다(Kymlicka, 1995:94-101). 한국사회의 이주자들 또한 다르지 않다. 보편적 시민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도 보장받을 수 없기에, 한국사회 이주자들은 문화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보편적인 시민권의 확장을 요청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시민권이 성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고 발전되어져 온 이념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이주자들과 달리, 한국의 이주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공통의 시민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러한 현실에 무지하다. 한국의 이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권리를 외면한 채, 이주자 스스로가 요구하지도 않은 다문화주의를 정책과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앞질러가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을 탈정치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을 타자화하고 있다. 킴리카의 지적대로,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 다문화주의는 배제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며(Kymlicka. 2002: 495), 한국적 맥락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에스닉 소수자들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이주자들에게도 보편적 시민권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이주자들에게 문화적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이주민 밴드 <스탑크랙다운>을 외국인노동자 문화축제에 초청하면서 नेपाल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이(심보선. 2007: 231 참조), 이주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는 보편적 존엄성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문화적 차이만을 축복하는 다문화주의는 자칫 이주자들의 문화를 본질화하고, 경제적인 부정의를 은폐할 위험을 갖는다. 차이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상호인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인정을 실현하기에 다문화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개념이자 이론이다. 그것은 “윤리적 자각을 통해 소수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관용하라”는 일종의 도덕적 강제를 포함하며, 당위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여러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시민권 없는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나 본질화, 게토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화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주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승인의 욕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한국사회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보다는 플레이어의 이차원적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이주자들은 문화적 지배, 불인정, 무시와 같은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착취, 경제적 주변화, 박탈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권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부정의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의 권리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이들의 문화를 박제화 할 위험을 갖는다.

차이의 정치는 결코 존엄성의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존엄성의 정치를 토대로 실현될 수 있다.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문화적 정체성을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부정을 시정하기 위한 이차원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요용어: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여성결혼이민자 시민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인정투쟁

참고문헌

- 김남국. 2005.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87~107쪽.
- 김민정. 2010.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2010년 11월 이주여성인권포럼 월례 모임 발표문. (2011. 11. 25).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7~348쪽.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 여성 연구》, 46(2). 129~157쪽.
- _____.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쪽.
- 김현미. 2008a.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8쪽.
- _____. 2008b.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자료집. (2008. 11. 21.).
- 김현미 · 김기돈 · 김민정 · 김정선 · 김철효. 2007.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57~80쪽.
- 김혜순. 2007. 「다인종 · 다민족화와 다문화 논란」.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1~37쪽.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2쪽.
- 박종보. 2007.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발제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7. 1. 26).
- 박천웅. 2007.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181~217쪽.
- 설동훈. 2005.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윤수중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69~109쪽.
- 소라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저스티스》, 96호. 43~53쪽.
- _____. 2009.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자료집. (2009. 11. 19-20). 139~168쪽.
- 심보선. 2007.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활동과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223~241쪽.
- 양혜우. 2011a. 「귀환 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네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11b.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특강 발표문(2011. 5. 26).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1~56쪽.
- _____. 2010. 「“다문화 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국토》, 통권342호. 39~45쪽.
- 오경석, 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쪽.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쪽.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쪽.
- 이병렬·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제90호. 320~362쪽.
- 이선옥. 2005.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81~110쪽.
- 이철우. 2004.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2004년 후기 사회학 대회 발표문.
- _____. 2008.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62~87쪽.
- 이혜경. 2007.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219~250쪽.
- 장서연. 2009. 「사회권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9. 11. 19-20). 170~217쪽.
- 정정훈. 2006. 「탈국가적 정치주체로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 활동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순영. 2007.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주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2007. 6. 7.).
- 최유. 2008.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통권 제79호. 115~138쪽.
- 최현. 2008.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38~61쪽.
- 허오영숙. 2011.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재생산」.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지구화시대의 재생산과 시민권> 자료집. (2011. 4. 22.). 73~81쪽.
- Aleinikoff, T. A. and Klusmeyer. D. 2002. *Citizenship Policies for an Age of Migr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Bosniak. L. 2000. “Citizenship Denationalized”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7. pp. 447~509.
- Fraser. N. 2003.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in N. Fraser and A.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pp. 7~88.
- Gutmann. A.(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 이현재 역. 1996. 동녘.

- _____. 2003. "Redistribution as Recognition: A Response to Nancy Fraser" in N. Fraser and A.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pp. 110~197.
- Joppke. C. 2002. "Multicultural Citizenship" in E. F. Isin and B. S. Turner(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pp. 245~258.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역. 2005. 동명사.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역. 2002. 한울.
-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73.

- 정부문건 및 관련법안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중앙인사위원회 • 기획예산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 (2006. 4. 26.).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기획예산처 • 국정홍보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2006. 4. 26.).
- 국무총리실. 2009.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 보도자료>. (2009. 6. 21.).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 (2008. 3.).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1.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안. (2008. 10. 30.).
- 외국인 정책위원회. 2008~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08~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
월일 2007. 3. 8.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시행령.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06. 11.
17.

제 2 부 라운드테이블 토론

1. 대안적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의 가능성

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 현장 주체들의 실천과 연대

김성미경(인천여성의전화-아이다마켓시스터푸드 대표)

3. 이론, 실천과 정책의 연결 지점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4. 결혼이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두년(중원대 법학과 교수)

5. 입법적 조치와 정책 제언

김춘진(국회의원)

